



202.8 호

행정명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에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COVID-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OVID-19 비상 재난에 가장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뉴욕주가 신속하게 모든 물품, 서비스, 전문 인력, 자원봉사 인력을 소집하여 조직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 2020년 4월 19일 일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법원 운영을 필수적인 사안으로 제한한다는 뉴욕주 대법원장의 명령에 따라, COVID-19 보건 위기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형사 절차법, 가족 법원 명령, 민사법, 민사 규정, 형사 법원 명령, 대리인 출법 절차법, 군사 법원 법, 기타 모든 법령, 법률, 조례, 명령, 규칙, 규정의 일체 또는 전부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뉴욕주의 절차법에 따라 특정한 기한을 부여 받은 모든 법적 조치, 통지, 행동, 기타 절차 또는 진행의 시행, 제출, 또는 서비스는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 연기됩니다.
- 행정명령 기간 동안 2020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 운전면허가 만료되는 자에게 유효 기간이나 만료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차량 및 교통법(Vehicle and Traffic Law) 제503조 부속조항 1.
- 행정명령 기간 동안 2020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 비운전자 신분증이 만료되는 자에게 유효 기간이나 만료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차량 및 교통법(Vehicle and Traffic Law) 제491항 부속조항 1.
- 행정명령 기간 동안 2020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 등록 또는 번호판이 만료되는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오토바이, 스노우 모빌, 선박, 제한된 사용 차량 및 모든 육로 차량에 대하여 등록 또는 번호판의 유효 기간이나 만료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차량 및 교통법 제401조, 제410조, 제222조, 제2251조, 제2261조, 제2282(4)조.
- 자동차 판매자가 발행한 임시 등록 서류의 유효 기간을 행정명령 적용 기간으로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차량 및 교통법 제420-a조.
- 의무적으로 주주총회를 통지하고 실제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기업법(Business Corporate Law) 제602조 부속조항 (a), 제 605호 부속조항 (a) 및 (b).

그러므로, 이제, 행정부법(Executive Law) 2-B조의 제29-a항가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4월 19일 일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령합니다.

- 행정명령 202.6항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이는 3월 22일 오후 8시부터 발효됩니다. 주의 모든 사업체 및 비영리 단체는 최대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텔레커뮤팅 또는 재택근무 절차를 시행합니다. 각 고용주는 모든 작업 공간에서 대면 인력을 줄여 3월 22일 오후 8시까지 100 퍼센트 감축해야 합니다. 모든 필수적인 서비스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사업체 또는 단체에는 대면 제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수 사업체 또는 비필수 사업체 여부에 관계없이 필수 서비스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단체는 대면 업무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명령을 위반하는 모든 사업체는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Law) 제12조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이 강제 집행 대상이 됩니다.
- 모든 주거 또는 상업 자산의 임대인에 대한 퇴거 또는 주거용 또는 상업용 자산의 차압이 90일 동안 시행되지 않습니다.
- 3월 20일 오후 8시를 기하여 모든 주정부 및 카운티 차량관리부의 대면 업무 예약이 취소되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업무만이 허용됩니다.
- 조세법(Tax Law) 제1145조에 세금 법률의 1145항에 의거하여 지연 신고 및 지불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조세 및 금융 커미셔너의 권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 분기별 판매세에 대해 2020년 3월 20일까지 환급 신청과 판매 및 이용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60일동안 이자 면제 승인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확대됩니다.



2020년 3월 20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Andrew Cuomo', written in a cursive style.

주지사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Ms. C', written in a cursive style.

주지사 비서